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6. 14 선고 2019가단366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2. D

변론 종결2019. 5. 17.

판결 선고2019. 6. 1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,310,684원 및 그 중 63,000,000원에 대하여 2018. 11. 12.부터 2019. 5. 3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1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나. 피고 2: 공시송달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항병헌

별지